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·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 : 남궁역 의원
- 나. 의안번호 : 제1284호
- 다. 발의일자 : 2023.10.10
- 라. 회부일자 : 2023.10.23

2. 제 안 사 유

-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원을 비롯한 유치원과 초·중·고교 등 교육시설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등 시설에 대해서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가능하게 하여 서울시 수돗물 음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등 시설에 대해서도 음수대 설치가 가능

하도록 함(안 제31조제1항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련 법령 : 「고등교육법」

나. 예산 조치 : 별첨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교 등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르는 시설을 대상으로 아리수 음수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 제1조에서는 서울시의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아리수 음수대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 제6조에서는 아리수음수대 설치가 가능한 학교와 공원 등의 시설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.

「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아리수 음수대 설치·관리와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6 조(설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 설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 2 조에 따른 학교 및 「평생교육법」 제 31 조제 2 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
2. 「유아교육법」 제 7 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
3. 공공기관의 민원실 또는 복도 등 공용 공간
4. 공원, 광장,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의 주요 지점
5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- 이 중, 학교 등 교육시설의 경우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평생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등에 따른 유치원과 초,중,고등학교에서는 아리수음수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르는 대학교

등은 제외되어 있는 바, 대학교 등에서도 아리수음수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동 조례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.

<교육기관(시설) 아리수음수대 설치 현황('23.9월 기준)>

구 분	합계	초·중·고	유치원	평생교육시설
개소	1,416	1,245	167	4
대	23,134	22,696	424	14

※ 공공기간, 공원, 지하철 등 : 1,484개소, 3,411대

- 특히,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‘아리수 대학생 서포터즈’ 오프라인 캠페인은 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아리수 홍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내 아리수음수대 설치가 전무한 상황인 바, 대학교 내에 아리수음수대 설치를 통한 아리수 홍보 활동은 수도물 음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